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 규정 정비(안 제11조)

-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 변경

나.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(안 제12조제3항)

-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 기준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0. 3. 3. ~ 3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(기획실-1732, 2020.2.18.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.(기획실-1732, 2020.2.18.)
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.(복지과-7464, 2020.2.12.)
- 5) 조례·규칙 심의회 : 원안의회결.(기획실-4636, 2020.4.23.)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”를 “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”로 하고 “08:00~12:00”를 “09:00~12:00”로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2. 군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행사
3.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
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제 11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<u>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</u>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을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시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8:00~12:00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다만,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:00~17: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야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:00~22: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. (생 략)</p> <p>제12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~②.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신 설></p>	기준	사용시간	비고	오전	08:00~12:00	다만,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오후	13:00~17:00	야간	18:00~22:00	<p>제11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- ----- <u>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시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9:00~12:00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다만,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:00~17: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야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:00~22: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~②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</u> 2. <u>군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행사</u> 3. <u>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</u> 4. <u>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</u> 	기준	사용시간	비고	오전	09:00~12:00	다만,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오후	13:00~17:00	야간	18:00~22:00
기준	사용시간	비고																			
오전	08:00~12:00	다만,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
오후	13:00~17:00																				
야간	18:00~22:00																				
기준	사용시간	비고																			
오전	09:00~12:00	다만,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
오후	13:00~17:00																				
야간	18:00~22:00																				

[별표]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(제11조제2항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구분 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
공연장	오전	50,000	1. 1회 단가임. 2. 토요일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3. 익일의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(철야 포함) 작업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.
	오후	70,000	
	야간	100,000	
전시실	1일	20,000	1일(09:00~18:00)
소공연장	1회	30,000	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
야외무대	1회	30,000	
연습실	1회	10,000	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이용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시설별	기준	요금	비고
악기	피아노	1회 20,000	-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- 1회란 오전, 오후, 야간 중 하나
무대조명	대공연장	1회 20,000	-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 사용료는 면제
	소공연장	1회 10,000	
음향시설	음향반사판	1회 20,000	
	핀마이크	1회 20,000	
	무선마이크	1회 10,000	
	빔프로젝트	1회 10,000	

관계법령 발췌서

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시설관리과장 남궁경
연락처	(033) 330-2019